

체육시설 (전용)사용 신청서

체육시설 (전용)사용 신청서

신 청 번 호				전기 사용 여부		
신 청 인	성 명 (단체 또는 법인명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전화	
	주 소					
	E -mail					
	대표자 성명	전화		휴대폰		
	담당자 성명	전화		휴대폰		
사용목적						
사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						
사용기간	년 월 일		시부터	년 월 일	시까지	
사용인원	계	임 원	회 원	방송·촬영	비 고	
사용료	전용사용료	음향조명비	장내 정리비	총계(부가세포함)	입금자명	
관 람 권 발행계획	일 반 관 람 권	원 매	청소년·어린이 관람권		원 매	
	단 체 관 람 권	원 매	초 대 권		원 매	
	경 로 우 대 권	원 매	기 타			
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속시설 사용신청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○ 관람권 발행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관람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○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기대회 및 공연 등을 개최하면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 ○ 공사에서는 처리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도·시가 주최(주관)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하게 될 때에는 사용을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. 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					
	년 월 일					
	신청인			□		
	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					

사 용 계 약 서

본인은 **하남도시공사의 체육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, 만약 이행치 않을 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시설물과 물품 파손 비용 등을 보상하고,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여 피해보상을 원상복구 또는 현 시가를 기준하여 보상할 것을 서약합니다.**

1. 본 시설물 사용은 행사 사용 처리 목적 이외의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.
2.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**안전사고**에 대하여서는 **사용자가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 예방**을 위하여 시설 및 인원 **통제**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3.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**원상회복**하여야 하며,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지 않습니다. 만약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.
4. 사용 중 일체의 **상(영업행위)행위**를 하지 않으며, 적발시에는 즉각 모든 행사, 대회, 교육 등을 중단하고 퇴실합니다.
5. 시설 운영 부서의 지시 및 협조사항을 반드시 이행합니다.
6. 행사 종료 후 직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퇴청합니다.
7. 하남종합운동장 모든 시설은 **금연구역** 이므로 이를 꿀히 지킵니다.
8. 사용중 발생한 **쓰레기**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, 사용자는 아래의 **직접 처리 계약**을 하거나 **외부 용역업체와의 계약서**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9. **취사는 금지** 사항입니다. 발견될 시에는 즉시 퇴장조치 합니다.
10. 경기장 내로 **주류(음료수, 술)** 및 **음식물** 반입은 **금지됩니다**. 만약 적발시 행사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.
11. **대관시간은 준수해야** 하며 초과 사용시에는 규정에 맞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합니다.
12. 공사에서는 처리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도·시가 주최(주관)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하게 될 때에는 사용처리를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13. 시설물 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, 필요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광고물, 현수막 등을 임의로 부착해서는 안됩니다.
14. 사용료의 환불과 사용의 변경/취소는 **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**의 규정에 의합니다.
15. 관외 법인·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합니다.
16. 확성기 및 음향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항시 배치하고 확성기 사용 자체(음악 및 마이크 소리 낮게 유지) 등 자체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소음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소음측정으로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.(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 규제기준)
17. **공연음란죄 및 혐오심, 수치심등을 유발하는 풍기문란 행위단체는 즉시 사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**
18.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.
19. 대관 신청 및 승인후 기재사실이 허위로 드러났거나 무단으로 타 단체에 대관 승인을 양도 한 경우에는 승인 취소 및 이용정지를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모든 배상을 책임집니다.

※ 쓰레기 처리계약	<input type="radio"/> 사용 후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 한다.(만약 위반시 추후 청구 및 행정조치)
	<input type="radio"/> 서명 :

년 월 일

신청인 **인**
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